

EU Brief

| 월간 EU 동향 |

- 2010년 EU 경제 전망
EU Economic Forecast 2010
- EU의 ODA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
EU's efforts to achieve aid effectiveness
-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위기 이후 친환경 국제통상 이슈
EU's climate change policies and environment-related trade issues
- 프랑스가 주도하는 EU의 원전산업
France is a leading country in EU nuclear power industry
- EU 경쟁법의 규제와 대응
Dealing with regulations of EU competition law



SAMSUNG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EU Economy

2010년 EU 경제 전망
EU Economic Forecast 2010

002



EU Politics

EU의 ODA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
EU's efforts to achieve aid effectiveness

006



Trade Issues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위기 이후 친환경 국제통상 이슈
EU's climate change policies and environment-related trade issues

010



Industry Trends

프랑스가 주도하는 EU의 원전산업
France is a leading country in EU nuclear power industry

014



EU Law

EU 경쟁법의 규제와 대응
Dealing with regulations of EU competition law

019



Social Issues

하나의 유럽을 향한 노력: 유럽의 문화예술인 교류 지원 프로그램
Another way of integrating Europe: European Talent Exchange Program

023



Report Review

유로지역 경제동향: 지속적인 실업률 상승이 문제
Continued rise in unemployment threatens Euro area's economic recovery

026



EU Centre news

제1회 국제학술회의(Annual Meeting)
EU Centre's First Annual International Academic Meeting

028

2010년 EU 경제 전망

EU Economic Forecast 2010

The EU economy experienced a severe economic downturn as its GDP shrank by 4% in 2009. An unprecedented level of government's economic stimulus spending led the EU economy to grow in the third quarter of 2009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first quarter of the previous year. It is expected to grow at a moderate rate of 1% in 2010, but this forecast depends on several factors. It is unlikely to be achieved if the EU experiences severe government debt crises, a rapid appreciation of the Euro or an extended period of tight credit conditions.

EU 경제는 2009년 하반기에 회복세를 시현

2009년 EU는 경제성장률이 -4.0%를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침체를 경험했다. 상반기에는 금융불안이 EU 경제 전체를 흔드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동유럽 금융위기가 서유럽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동유럽 국가의 연쇄부도설이 제2차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며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헝가리, 루마니아, 라트비아 등 자국 통화 가치가 취약한 비유로지역과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등 서유럽의 지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비EU 국가들이 더욱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유럽 국가들 중 EU 회원국 3개국, 비EU 4개국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나타냄에 따라 EU 경제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09년 3/4분기 EU의 경제성장률은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뒤 6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0.3% 성장). 유로지역의 2009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로, 이는 1/4분기 -2.4%, 2/4분기 -0.2%에 비해 훨씬 개선된 수치이며, 당초의 예상보다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경기체감지수(ESI), 구매관리자지수(PMI), 산업생

산증가율 등 주요 경기지표들이 경기확장 국면에 진입했다. 이는 해외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와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가시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U의 빠른 경제회복은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 2/4분기에 전 분기 대비 0.3% 성장했던 두 국가는 3/4분기에도 각각 0.7%, 0.3%씩 성장한 것으로 집계돼 최악의 경기침체에서 빠져나왔음을 보여준다. 이는 해외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와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바 크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자동차, 화학제품 등의 수출이 늘고, 기업투자 및 신규 건설이 증가했으며, 신차 구입보조금 제도의 시행으로 7개월간 200만 대의 신차가 판매되는 등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프랑스의 경우 내수는 크게 회복되지 않았으나 수출이 크게 늘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이를 기반으로 EU집행위원회는 2009년 양국의 성장률을 각각 상향 조정했다.¹ 독일과 프랑스가 계속해서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을 주도해나갈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¹ EU집행위원회는 2009년 3/4분기 발표한 전망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2009년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 독일 -5.4%(5월) → -5.1%(9월), 프랑스: -3.0%(5월) → -2.1%(9월)

2010년 1% 내외의 저성장이 예상되며

리스크 요인도 상존

EU는 당초 금융위기의 여파로 2010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09년 하반기에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기록함에 따라 소폭의 플러스 성장(1.0% 이하)으로 경제성장률 예측이 상향 조정되었다. 2010년에도 독일과 프랑스가 EU 경제의 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각각 1.2% 성장). 하지만 아일랜드, 스페인, 동유럽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에서도 수출부진, 소비침체, 은행부실 등 경기회복세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특히 2010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금융위기 기간에 시행되었던 경기부양책이 종료되고 재정적자 문제도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 여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 시점에 정부 주도 성장이 민간부문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지 못할 경우 성장률이 재차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2010년 EU 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리스크 요인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리스크 요인 1: 국가부채 위기의 확산

고용사정이 악화된 가운데 재정적자가 확대되어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한하고 있다. 2010년 EU의 실업률은 2009년 9.4%에서 2010년 10.3%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0년 GDP 대비 공공부채와 재정적자 규모는 각각 79.3%와 7.5%로 예상된다. 이는 EU의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의 기준²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2010년 총 27개국 중 23개국이 이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대응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고용까지 악화되면 민간소비 침체는 불가피하다. 더구나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오랜 세월 동안 사회 안정의

² 재정적자는 GDP 대비 3% 이내, 공공부채는 60% 이내로 제한할 것을 규정

바탕이 되어왔던 유럽 사회보장제도의 근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9년 그리스는 GDP의 118%에 이르는 국가채무와 GDP의 12.7%로 추산되는 재정적자 문제로 국가 신용등급이 'A-'에서 'BBB+'로 추락하면서 국가부도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다. 그리스는 재정적자를 GDP의 9% 수준으로 낮추고, 공공부채 규모 역시 2012년부터는 축소 기조로 돌려놓겠다는 자구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확신을 얻기에는 아직 역부족으로 보인다. 오히려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으로 국가부채 문제가 확산될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 PIIGS 국가들의 2010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규모 (단위: %)

	재정적자비율		국가부채비율	
	2009	2010	2009	2010
포르투갈	-8	-8	77.4	84.6
아일랜드	-12.5	-14.7	65.8	82.9
이탈리아	-5.3	-5.3	114.6	116.7
그리스	-12.7	-12.2	112.6	124.9
스페인	-11.2	-10.1	54.3	66.3

주: PIIGS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5개국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약자
자료: European Commission

리스크 요인 2: 신용경색 문제의 지속

여전히 풀리지 않는 신용경색 문제는 금융부문의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 은행들의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여전하다. 유럽 주요 은행들은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부실보다 추가 상각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2007~2010년 동안 주요 은행들의 부실 규모는 약 8,140억 달러인데, 2009년까지의 손실상각액이 3,500억 달러인 것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으로 4,0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로이즈뱅크, BNP파리바, 유니크레디트 등 주요 은행들이 구제금융 조기 상환, 자본규제 강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자본 확충을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의 민간대출 여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통계치에 의하면 유로지역의 기업 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유동성 경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2009년 11월).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지역의 비금융부문 기업 대출이 전년 대비 1.9% 줄어든 4조 7,210억 유로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0월에 1.2% 감소한 것에 비해 감소 폭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11월의 전체 민간부문의 대출은 -0.7%를 기록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리스크 요인 3: 유로화 강세

2009년 3월 1.25달러대까지 떨어졌던 유로화 가치는 10월이 되자 1.50달러 선을 돌파하였다. 최근 그리스의 재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유로화는 약세로 돌아섰지만, EU집행위원회는 유로화의 가치가 타 통화에 비해 7~8% 고평가되어 있어 유로화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유로화 강세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유로지역 간 정책금리 차이³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의 경기 회복 속도와 주요국 출구전략 시기를 고려할 때 2010년 상반기에도 그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⁴ 최근 유로화의 강세가 유로지역의 상품수지 흑자폭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⁵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유로화 강세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EU의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유로화 가치 상승이 고전하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경제

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국가들의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은 유로화 가입 이후 상당히 높아졌으며, 이는 교역 상대국이나 유로지역 인근국에 비해 유로화 상승과 국내 노동비용 증가 폭이 커져 경쟁력이 저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S&P는 유로-달러 환율이 2010년에 1.7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세는 이탈리아나 그리스, 아일랜드 등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리스크 요인 4: 회원국 간 양극화 심화

2010년 EU 경제의 또 다른 화두는 회원국별로 상이한 경기회복 속도의 차이이다. 즉,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회복되는 회원국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유로지역에서는 독일, 프랑스가 2009년 2/4분기부터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가시화됨으로써 빠른 회복세를 시현했다. 이에 반해 스페인, 아일랜드에서는 주택가격 하락과 건설경기 침체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민간부채 수준이 높고 은행의 대출 및 예금 비율도 높아 신용경색 문제도 여전하다. 이러한 여파는 2010년에도 이어져 EU 경기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스페인, 아일랜드의 2010년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양극화 현상은 동유럽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유로화 사용으로 인해 금융위기의 여파가 비교적 크지 않았던 슬로베니아와 슬로바키아, 내수가 강한 폴란드, 금융부문의 해외의존도가 낮은 체코는 2010년 동유럽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과 실물 부문에서 높은 해외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거시경제 기초가 흔들리는 동유럽 국가들은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금융위기가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들 국가는 2009년 연쇄부도설과 같은 급박한 위협은 없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이 구조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

상된다. 특히 거시경제 기초가 취약한 발틱 3국과 헝가리는 2010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세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회원국 간 양극화 심화는 EU 경제 전반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U는 70%에 육박하는 높은 역내 무역 비중⁶을 보이고 있어 상호의존도가 매우 크며, 對동유럽 대외채권 비율이 높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일부 동유럽 국가의 금융불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EU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국가	2008년	2009년	2010년
유로지역	독일	1.3	-4.7	1.2
	프랑스	0.7	-2.1	1.2
	이탈리아	-1.0	-5.0	0.5
	스페인	1.2	-3.7	-0.7
	아일랜드	-2.3	-9.0	-2.0
비(非)유로지역	폴란드	4.9	1.0	1.9
	체코	3.0	-3.5	0.9
	헝가리	0.6	-6.3	-1.0
	라트비아	-4.6	-16.9	-3.8
	리투아니아	3.0	-15.0	-4.5
	에스토니아	-3.6	-13.0	-3.0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EU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

2010년은 EU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EU의 미헌법인 리스본조약의 발효로 본격적인 정치통합을 완성해나가는 단계⁷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치적 통합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금융위기

³ 현재 FRB의 정책금리는 0.25%, ECB의 정책금리는 1.0%
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도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다면 안전자산인 달러화의 가치는 강세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⁵ 최근 유로화의 상승과 함께 유로지역의 상품수지 흑자폭은 감소세를 보였다: 19억 유로(6월) → 60억 유로(7월) → 10억 유로(8월)
⁶ EU의 역내 수출 비중은 68.8%를 차지하며 역내 수입 비중은 66.5%를 차지
⁷ 3대 주요 기관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U집행위원회(EU Commission)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는 등 EU 내 권한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정치통합의 토대를 마련했다.

의 후유증을 극복해나가는 과제를 안고 있는 2010년에 찾아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었던 정부 주도의 성장이 민간부문으로 전환되는 시점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회원국들의 컨센서스 형성은 결코 수월한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도 회원국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엇갈릴 경우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왔다. 경기부양책과 출구전략을 둘러싼 의견 충돌,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역내 보호주의 확산, ECB의 금리정책에 대한 반발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므로 2010년 EU는 양극화 심화, 회원국 간 상이한 경제환경,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인한 갈등을 정치적 리더십으로 극복해야 한다. 즉, 정책금리 차이 등 주요국과의 출구전략 공조(유로화 강세), 고용 약화에 따른 보호주의 확산 방지(실업률), 보수적인 거시정책 기조와 경기회복 모멘텀 간의 적절한 조화(재정적자), 신용경색 문제 재발 방지(은행부실) 등을 둘러싼 각 회원국의 상이한 이해관계들을 통합된 정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결과에 따라 리스본체제의 성공적인 작동 여부는 물론 향후 국제사회에서 EU의 정치·경제적 위상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2010년 EU는 리스본체제를 바탕으로 통합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야 하는 정치적 과제와 금융위기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해나가는 경제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³ 현재 FRB의 정책금리는 0.25%, ECB의 정책금리는 1.0%
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도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다면 안전자산인 달러화의 가치는 강세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⁵ 최근 유로화의 상승과 함께 유로지역의 상품수지 흑자폭은 감소세를 보였다: 19억 유로(6월) → 60억 유로(7월) → 10억 유로(8월)

EU의 ODA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

EU's efforts to achieve aid effectiveness

The EU is the world's largest donor to developing countries as its ODA accounted for almost 60% of the world's total in 2008. The EU, however, has recognised the weaknesses of its fragmented system of decision 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The Commission estimates the potential benefits of raising aid effectiveness to be in the range of 3 to 6 billion Euro per year between 2010 and 2015 by making improvements in terms of increased predictability, reduced donor proliferation, and a further untying of aid. In 2010, we expect there to be major organisational changes in the EU's external relations structure under the Lisbon trea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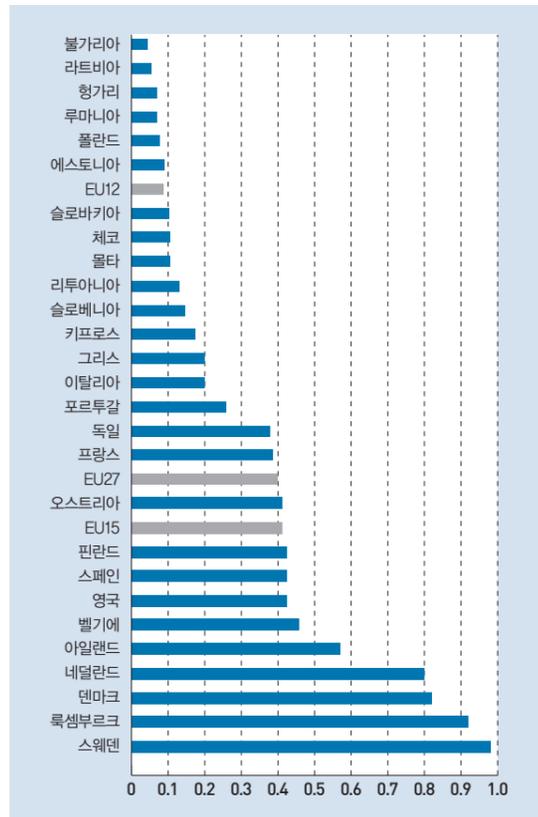
개발원조의 선두주자 EU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외교 및 정치관계 강화, 경제개발, 무역증진, 인도주의, 문화전파 등을 위해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선진국들의 경우, 예전에 식민지였던 국가들에 개발원조 및 무역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08년 EU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id) 규모는 490억 유로였고, 이는 전 세계 ODA의 60%에 가까운 수준이다. 2009년 11월 한국이 24번째 회원으로 가입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는 EU 집행위원회를 제외한 15개의 유럽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다. 2008년 한국의 GNI 대비 ODA 비율이 0.09%였던 것에 비해 EU는 0.4%를 기록하였다. 이는 EU 인구 1인당 100유로 수준에 달하는 규모이다.¹

2008년 기준 DAC 국가 중 GNI 대비 ODA가 가장 높았던 1~5위 국가들은 스웨덴(0.98%), 룩셈부르크(0.92%), 노르웨이(0.88%), 덴마크(0.82%), 네덜란드(0.80%)로 모두 유럽 국가들이 차지했다. 총 원조 규모는 미국이 268.4억 달러(GNI 대비 0.18%)로 1위를 차지하였고, 독일(139.8억 달러), 영국

¹ 2008년 DAC 국가들의 GNI 대비 ODA 비율은 0.30%를 기록했으며, DAC 국가들의 평균치는 0.47%.

★ EU 회원국들의 2008년 GNI 대비 ODA 규모 (단위: %)



자료: OECD, DAC Aid Statistics

(115.0억 달러), 프랑스(109.1억 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EU의 2010년 ODA 목표치는 GNI 대비

0.56%이며, 개별국가로는 EU12 국가들이 0.17%, EU15 국가들은 0.51%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GNI 대비 0.51%가 넘는 ODA를 지원하고 있는 EU 국가들은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ODA를 계획하고 있다.

OECD는 2008년과 2010년 사이 국제 공적개발원조 증가규모의 76%를 EU로부터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2010년 ODA 규모가 GNI 대비 1.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² EU15는 2015년까지 유엔의 권고치인 0.7%를, EU12는 0.33%를 목표치로 삼고 있다.

한편 2005년 EU 회원국들은 사하라 이남지역(SSA)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총 원조금 확대 규모의 최소 50%를 이들 국가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으로 합의하였다. 아프리카는 2008년 EU의 양자 간 ODA 중 29%를 지원받았다. 2005년 SSA 국가들은 EU의 아프리카 원조금 중 26%(부채탕감 제외)를 지원받았으며, 2008년에는 이 비중이 40%까지 증가하였다.³ 또한 2008년 EU는 GNI 대비 총 0.15%~0.2% 수준의 ODA를 2010년까지 최빈국에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EU15의 최빈국 ODA는 1996~1997년 GNI 대비 0.08%를 기록한 후 2007년 0.12%로 증가하였다. EU집행위원회는 현재 추세를 고려해볼 때 2010년 목표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⁴

ODA 효율성 강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EU의 개발원조는 2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EU는 원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EU의 ODA 규모가 늘어나고 지원국의 수도 증가하면서 기부금 사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EU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⁵에 따르면, 2010년과 2015년 사이

² DCD-DAC (2009. 3.). OECD-DAC Secretariat simulation of DAC members' net ODA volumes in 2008 and 2010. OECD

³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30%를 기록.

⁴ European Commission (2009. 9.).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in coping with the crisis: What prospects for meeting the EU targets of 2010 and 2015? (Working Paper).

EU 지원국들이 공조 강화와 지원방법 개선 등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 규모는 매년 30억 유로에서 60억 유로에 달한다.⁶ 회원국들의 원조조달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EU는 더욱 빠른 시일 내에 ODA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원국과 프로젝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적인 요소, 구속성 원조⁷, 원조의 규모와 시기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점도 증가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현재 EU15 회원국들은 대략 400~500개의 최우선 수혜국을 지정하고 있다. 수혜국 중 많은 국가에 지원이 중복되어 원조 조달에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 2007년 EU집행위원회와 EU 국가들에 등록된 신규 원조 프로젝트 및 활동 건수는 4만~5만 개로 2003년에 비해 1만~2만 건 증가하였다.⁸ 같은 해 원조금이 지급된 2만 2,000개의 프로젝트 및 원조활동에는 평균적으로 70~100만 유로의 예산이 할당되었으며, 계획단계에서 들어간 비용만 1건당 9~14만 유로였다. 결과적으로 2007년 원조 프로젝트 및 원조활동 계획단계에 들어간 총 비용은 19억~30억 유로로 추정된다.

수혜국 정부 또한 나날이 증가하는 지원국들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 2007년 수혜국 지원 분야 중 41%가 무려 3개 이상의 EU 회원국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점과 EU 원조 프로그램의 45%가 총 지원금의 12%만을 받은 점에서 볼 수 있듯이, EU 국가들과 NGO들이 공조를 강화한다면 업무 분담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U

⁵ European Commission. (2009.10.) Aid Effectiveness Agenda: Benefits of a European Approach.

⁶ 5년간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의 총 규모는 150억에서 300억 유로로 전망됨. European Commission (2009. 10.). Aid Effectiveness Agenda: Benefits of a European Approach.

⁷ 경쟁입찰 허용 등 제한적인 조건 부과에 따라 구속성(tied) 원조 및 비구속성(untied) 원조로 구분. 박번순 외 (2009). "국격 제고를 위한 ODA 정책" (CEO Information 제730호). 삼성경제연구소.

⁸ 활동 분류방법에 따라 등록 건수는 차이를 보임.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2만 2,000개의 프로젝트를 5개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할 경우 원조계획단계에 드는 비용을 매년 10억 유로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EU15의 ODA 중 EU집행위원회가 관리하는 비중이 2007년 26%에서 2008년 19%로 하락하였고 2013년에는 13%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통합과 조율은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조비용을 15~30%가량 증가시키는 구속성 원조⁹는 현재 EU 원조의 약 10%를 차지한다. 구속성 원조는 가격경쟁과 원조조달 속도를 둔화시키며 원조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조건부에 따른 자본재 수입은 수혜국들이 자본재에 따른 유지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2007년 그리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원조의 20% 이상이 구속성 원조로 이루어진 반면 룩셈부르크, 스웨덴, 영국의 원조는 모두 비구속성 원조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EU집행위원

회의 모든 원조와 스페인, 이탈리아 원조의 상당부분은 부분적 구속성 원조로 구분된다. 2010년과 2015년 사이 구속성 원조를 비구속화시키며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은 매년 5억 유로로 추정된다.

원조의 규모와 성격은 매년 각국 의회의 결정에 따라 변하는데, 이는 수혜국들의 원조 규모와 시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그해에 결정된 원조는 같은 해에 모두 지출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국 담당자들은 최상의 결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배분하고 지출하려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2007년 DAC 국가들이 지원하기로 계획한 원조 규모와 실제로 지원한 규모는 평균적으로 46%의 차이를 보였다.¹⁰ 결과적으로 수혜국들은 보수적으로 국가예산을 계획하게 되고 단기적 효과를 보일 프로젝트에 집중하게 된다. 예측 모델에 따라 이 문제점은 원조의 가치를 8%에서 20%까지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EU집행위원회는 원조 규모와 시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개선시켜 EU가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매년 20억~4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리스본조약은 EU 원조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개발원조와 관련하여 EU의 두 번째 과제는 개도국을 상대로 대외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될 집행부 설립과 정책 도입에 대한 업무 및 지역별 임무 분담이다.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며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과 유럽대외관계청이 신설되었고 유럽대외관계청은 EU의 국제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총 27명의 EU집행위원들은 2014년까지 전체 회원국 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로 축소되어 EU집행위원회의 효율성 개선에 기

⁹ Clay E, et al. (2008). The Developmental Effectiveness of Untied Aid: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Declaration and of the 2001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the LDCs. ODI.

¹⁰ OECD-DAC (2008). The 2008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Making aid more effective by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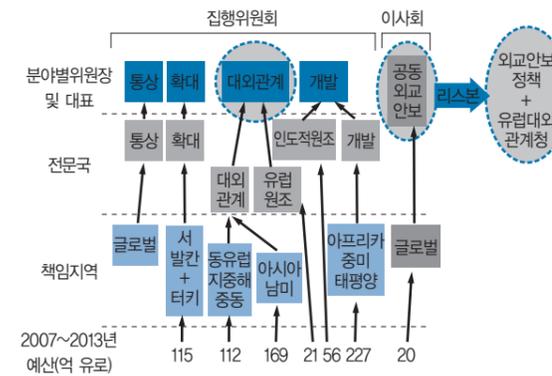
★ 2007년 EU 국가들의 구속성 원조 비중 (단위: %)

구분	구속성	부분적 구속성	비구속성
EU15	10	3	87
EU15+EC	8	28	64
오스트리아	24	0	76
벨기에	3	0	97
덴마크	0	5	95
핀란드	8	0	92
프랑스	10	0	90
독일	25	0	75
그리스	35	10	55
아일랜드	0	5	95
이탈리아	10	19	71
룩셈부르크	0	0	100
네덜란드	22	0	78
포르투갈	0	8	92
스페인	0	22	78
스웨덴	0	0	100
영국	0	0	100
EC	0	100	0

자료: OECD, CRS Database

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EU 주요 기관들의 구조적 변화는 EU의 대외정책은 물론 원조 관련 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그림 1> 리스본조약 도입 이후 대외관계 관련 EU 기관들의 구조 변화



자료: Gevas, M. & Maxwell, S. (2009, 8). Options for architectural reform in European Union development cooperation, (ODI Background Note), ODI.

<그림 1>은 리스본조약 도입 이전의 EU 대외관계위원회와 이사회의 구조, 그리고 도입 이후 지금까지의 변화를 보여준다.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은 조약 도입 이전의 공동외교안보 고위대표직과 대외관계 집행위원회의 임무를 맡게 되고 유럽대외관계청은 고위대표직 업무를 지원하며 EU 외교부 역할을 하게 된다.

원조 관련 정책계획과 도입에 대한 임무가 어떻게 분담되고 지역별 예산집행 권한이 어떻게 부여될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EU집행위원회는 업무통합과 예산분배를 결정할 때 정책의 일관성과 개발원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외관계 관련 위원회구조를 신중히 조정해야 한다. 분야별 경쟁과 과도한 업무 통합

¹¹ OECD가 주최하는 포럼으로 2003년 로마, 2005년 파리, 2008년 아그라에서 3차례 개최됨.

¹² 2008년 한국의 비구속성 ODA 비중은 약 36% 기록.

¹³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집중지원 대상국을 점진적으로 확대(2011년 목표는 7개국)하는 반면, 유·무상 통합 중점지원국을 30개 이내로 선정하고 일반지원국도 축소 및 조정할 계획.

및 개입은 EU의 개도국지원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ODA 효율성 제고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

'한국형 ODA 모델 정립'이 기획재정부가 2009년 12월 7일 발표한 '2010년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의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채택되었다. 한국은 DAC 회원 그리고 G20 의장국이라는 임무를 갖고 2010년을 맞았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할을 할 한국에게 2010년은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011년에는 '원조효율성 제고에 관한 제4차 고위급포럼(HLF-4)'¹¹을 유치하게 되며 원조정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서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10년 ODA 규모를 GNI 대비 0.15%로 높이고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해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짧은 원조 역사와 한정된 재원으로 한국의 ODA 정책은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또한 한국의 ODA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와 기관 간의 연계가 부족하여 원조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도 국제적 추세에 따라 최빈국 그리고 비구속성¹² ODA의 비중을 확대하고 중점지원국들의 수도 제한할 계획을 갖고 있다.¹³

한국형 원조 모델은 한국이 실제로 경험한 경제발전의 역사와 배경을 토대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원조활동을 통해 이를 전파하여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의 모델과는 다르다. 한국은 한국만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선진지원국과 차별화된 원조 전략을 도입 및 실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은 선진지원국, 특히 EU의 ODA 정책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ODA 효율성 제고와 지원국 간의 공조 강화에 대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위기 이후 친환경 국제통상 이슈

EU's climate change policies and environment-related trade issues

EU leaders have recently reached a new climate deal and the EU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international efforts to combat climate change. When adopting trade-related strategies in the future, it will be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limate change policies of the EU, which is one of the world's major economies and trading partners. Environment-related trade policies have already become a major issue in international trade and EU's policies are likely to have major impacts on Korean firms this year as the Korea-EU FTA is expected to come into force in 2010.

EU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정책을 수립하는 등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발전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정책과 수단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서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 및 무역질서의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EU의 위상을 고려할 때,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향후 통상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특히 한-EU FTA가 2010년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향후 국제통상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

위기 이후 친환경 국제통상 이슈가 부상

글로벌 금융위기를 탈출하려는 주요 선진국들은 지속가능성장 또는 녹색성장을 통한 경기회복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¹ 미국의 경우 향후 10년간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등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고, 영국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1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2009년 7월). 이와 더불어 EU는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허용 규제를 확산하는 한편,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에서 선진국 및 개도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

사국 총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방증한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보호주의적 색채를 띠고 비참여국에 대한 직·간접적인 형태의 무역제재를 가하여 특정 국가의 수출을 어렵게 함으로써 통상마찰의 요인이 될 소지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위기 이후 환경 이슈, 녹색보호주의, 다자간 무역-환경 협정 논의 개시 가능성 등이 새로운 통상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기후변화협약의 급부상과 선진국의 주도권 각축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에 채택된 후, 1997년 교토의정서를 거쳐 2009년 12월 코펜하겐 회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경제주체들에게 공동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문제의 핵심에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Our Common Future* 를 발간한 이후 주목받아온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 등의 개념이 어우러져 있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된 포스트 교토협약은 통상의 관점에서 친환경 산업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교토협약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미국이 기후변화협약을 놓고 EU와 주도권 경쟁을 벌이

는다면 환경산업을 전략적 성장산업화하려는 중국 역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실상 2009년 12월 코펜하겐 회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놓고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의 주도로 EU는 협상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EU는 '20-20-20 계획'²을 적극 홍보하며 참여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EU의 목표를 30%로 확대하겠다는 조건부 공약도 제시하였으나, 협상 참가국들을 압박하지는 못하였다. 비록 최종 합의과정에서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EU는 여전히 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대책 기금 조성 등에서 선도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구조

EU는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을 전후로 신축적 체제와 관련하여 배출권 거래제,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 체제의 현실적 적용에 주로 관심을 보였다. 그 이후 저감기술협력, 의무부담 구조 및 내역의 변화 등 장기적 현안과 더불어 배출권 거래제의 실제 도입 및 운영, 프로젝트 기반 협력 체제, 개별 회원국 내 기후변화 정책 및 조치 등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일련의 주제는 EU 회원국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속서 I 국가들(Annex I Parties)의 공통된 관심사이다.³ 특히 OECD 국가인 EU 회원국들은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에 대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최근 들어 EU는 시각을 넓혀 포스트-교토체제 논의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의 본질적인 속성인 '환경과 경제의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체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EU의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은 시장기반 정

책수단(MBI: Market based instruments)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MBI란 직접규제 대신 가격을 통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노선은 EU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하지만 환경 및 기후변화에 관한 일련의 규제들은 비관세 무역장벽을 구축함으로써 간접적인 무역제재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 CO₂ 배출허용규제

EU는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허용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130g/km, 2020년부터는 95g/km로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동시에 보완 조치로 자동차 제조업체는 10g/km을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보완 조치에는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에어컨의 최소 효율기준 설정, 강제적인 적정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시스템 도입, 최대 타이어 회전저항 기준 설정, 변속지시장치 적용, 경량용차 기준 향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⁴

2007년 12월 EU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자동차의 CO₂ 배출규제를 위한 강제규정안은 동년 2월에 발표된 새로운 전략 안에 차량 무게별 CO₂ 배출량 감축목표 설정, 자동차 제조업체별 공동 대응(a pool) 허용, 에너지 효율적인 자동차의 구매 촉진을 위한 탄소세 도입 및 라벨부착 조치 등을 추가하였다. 이 안은 자동차 업계의 자발적인 약속이행에 따른 배출 감축 계획안과 달리 법을 통한 강제성을 부과한다. 또한 무게를 토대로 배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는 일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EU는 이를 강행하였다.⁵

²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핵심. 이에 대해서는 후술

³ 1992년 기준 OECD 회원국, 러시아, 발틱 해 연안국 등 체제전환국을 포함. 이와 달리 부속서 II 국가는 부속서 I 국가 중 OECD 국가만을 포함.

⁴ European Commission. (2007). COM(2007) 19 final.; European Commission (2007). A Competitive Automotive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21st Century.

⁵ 다만 연간 신규등록 대수가 1만 대를 넘지 않는 소규모 자동차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¹ 친환경 정책을 통한 성장 모델을 거론할 때 EU는 '녹색성장' 대신 '지속가능성장'으로 표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European emission trading scheme)

EU의 기후변화정책은 2008년 1월 EU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계획 내용에 따라 '20-20-20 계획'으로 불린다. 2020년까지 EU 27개 회원국은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을 1990년 대비 20%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20% 제고하며, 전체 에너지 소비 가운데 20%를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것이 이 계획의 골자이다.⁶

탄소배출권 거래는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온실가스 배출 거래시장으로, '20-20-20 계획'의 핵심 도구이다. 2009년 11월 현재 세계 총 거래량 가운데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84%에 달한다.

현재 EU는 국가별 할당계획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교토의정서상의 의무를 이행 중이다. EU는 20-20-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별 의무 감축량을 정해놓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05년 1월부터 시행해왔다. 그러나 회원국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 독일, 스웨덴, 영국은 국내 정책과 조치를 통해 감축 목표를 달성해온 반면,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등은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⁷

EU집행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공동체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강제력 있는 효율적인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2008년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지침을 발표하였다. 주요 공동 목표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20%로 높인다는 것이다. 지침에 따라 개별 회원국들은 2010년 3월 말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EU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시험, 인증을 요하는 국가별 계획안, 설비 요구 등과 같은 특정 기술적 요구를 금지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설비 및 관련 제도의 국경 간 자유 이동을 저해하는 국가적 장벽을 거부한다. 동시에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해 생산된 전력에 대해 고정 가격으로 구매하는 '기준가격 의무구매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 현재 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제 도입을 제한한 상태인데, 이는 일정량의 에너지가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회원국 간 양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⁸

전망과 시사점: 녹색강국을 지향, 녹색보호주의는 경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국격 제고와 위기 극복 및 성장세 회복을 위해서는 성장과 환경보호 간 연계성을 최적화하여 녹색강국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기 이후 새롭게 부상될 녹색보호주의 이슈들이 국제무역과 연계되어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통상쟁점들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녹색보호주의란 아직까지 일반화된 정의는 없으나, 통상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 수행을 표면적인 목적으로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외국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 기업의 환경 관련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조치를 의

미한다. 미국 경제정책 연구센터(CEPR)의 Simon J. Evenett는 녹색보호주의를 "환경정책을 교묘히 이용하여 외국기업(현지법인 포함)의 상업적 이익 획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녹색보호주의는 무역을 통한 편익이 타국에 비해 클 때에만 무역이 가능하다는 상대적 이익에 치중하는 편협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국가가 보호주의 성향을 띠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망이라는 중상주의적 생각에서 녹색보호주의가 쉽게 지지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가는 수출생산으로 경제에 승수효과를 발생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수입은 소비자에게 현지 생산보다 더 낮은 가격과 더 높은 품질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절대적 이익에 기준하여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신속적 대응이 필요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체제 시행 이후 비참여국에 대해 직·간접적인 형태의 무역제재를 가하는 등 녹색보호주의 색채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녹색보호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문제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충분히 대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과 독일 등을 비롯하여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환경 관련 국제협상에 적극 동참하면서 녹색보호주의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여 해외 환경규제나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통상 문제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무역제제에 의한 수출산업의 피해는 물론 에너지 자원 등 성장 유망 분야에서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EU FTA는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은 이를 기업 및 국가 차원에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EU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기업이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제통상에서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신성장동력을 모색하는 기회를 잃게 되고 신용도 역시 하락할 수 있다.

EU의 산업계는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및 R&D 활동이 활발하다. 그만큼 기술 수준도 한국보다 훨씬 뛰어나다. 때마침 현재 EU는 2007~2013년에 이르는 R&D 7차 기본협력 프로그램(FP 7: Framework Programme)을 진행하고 있다. FP 7은 환경과 에너지 부문에 각각 5.6%와 7.1%의 예산을 할당하여 국제 R&D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2010년 발효를 앞둔 한-EU FTA를 계기로 양측 간 기술협력의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기업들은 기후변화협약의 환경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환경 기술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R&D 투자와 친환경 사업영역의 발굴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

양오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⁶ 이는 2008년 12월 12일 유럽이사회 승인을 받은, 17일에는 유럽의회가 EU 집행위원회 제안서 '에너지 기후정책(Energy-climate policy)'을 승인

⁷ European Commission (2008), COM(2008) 19 final.

⁸ 다만 최근 2년간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한 회원국에 한해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양도할 수 있다는 조건을 두었다.



프랑스가 주도하는 EU의 원전산업

France is a leading country in EU nuclear power industry

On the 27th of December, a South Korean consortium was awarded a contract to build nuclear power plants in the United Arab Emirates. Korea Electric Power beat out competitors from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France which dominates the international market. The French nuclear power industry and its major producers became the world's best as its government policies have been strongly supporting this sector. The development of the nuclear energy market presents a significant opportunity since nuclear energy is often regarded as a major renewable source in the times of energy security problems and global warming as we now face.

한국전력 컨소시엄은 2009년 12월 27일 아랍에미리트 원전건설 계약을 수주하는 데 성공하였다. 아랍에미리트 원전사업은 2017년까지 총 4기(각 1400 MW급)의 원전을 건설해 5,600MW의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이번 원전건설 부문의 수주액은 200억 달러이고, 원전 수명 60년 동안 운전, 기기교체 등에 참여해 200억 달러의 수익을 추가로 거둘 수 있다.

★ 아랍에미리트 원전 주요 입찰경과

단계	일자	참고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09.3.30	4개국 6개 컨소시엄 입찰서 제출 -한국(1): 한국전력 -프랑스(1): EDF (아레바, GDF, 수에즈, 토탈) -미국 (2) : GE, 웨스팅하우스 -일본 (2) : 도시바, 미쓰비시
1차 후보업체 선정	09.5.06	3개국 3개 컨소시엄 1차 후보업체 선정 -한국: 한국전력(현대건설, 삼성건설, 두산중공업) -프랑스: EDF (아레바, GDF, 수에즈, 토탈) -미국/일본: GE+히타치
입찰서 제출	09.7.03	한국, 프랑스, 미국/일본 3개 컨소시엄
입찰가격 수정안 제출	09.9~12월	-미국: GE+히타치 -프랑스: EDF (아레바, GDF, 수에즈, 토탈)
원전사업자 선정 및 계약식 체결	09.12.27	-한국전력 컨소시엄

자료: KOTRA

이번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에서 한국전력 컨소시엄과 끝까지 경합은 한 것은 프랑스 컨소시엄이었다. 프랑스 정부와 기업은 이번 아랍에미리트 원전사업의 추진 과정 초기에 영향력을 발휘했다.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 에너지 개발

아랍에미리트가 포함된 걸프협력기구(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카타르)는 2007년 2월 IAEA와 핵발전소 및 담수화 설비에 대한 타당성 조사 협력에 합의하였다. 이 지역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2008년 1월 프랑스 기업은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제안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프랑스 기업 컨소시엄은 아레바(Areva), 토탈(Total), 수에즈(Suez)로 구성되었고, 아레바는 핵심기술, 토탈은 오일필름, 수에즈는 담수설비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프랑스 컨소시엄은 2017년 이전 가동을 목표로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1,600MW급 혁신발전로(EPR: Evolutionary Power Reactor) 2기 건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2008년 1월 아랍에미리트와 프랑스 정부는 원자력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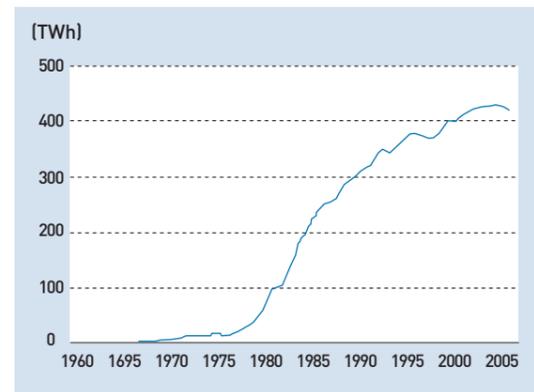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랍에미리트는 2008년 4월 독자적인 핵에너지 정책으로 「원자력 에너지 백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서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개발 및 평가를 위한 정책을 주장하였고, 핵에너지공사(ENEC: Emirate Nuclear Energy Corporation) 창설이 결정되었다. 2009년 2월 ENEC는 원전건설 계약에 대한 입찰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프랑스의 원자력 에너지 개발 및 EURATOM 창설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 에너지 개발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는데, 프랑스가 원전수주에서 초반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 정부가 2차 대전 이후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1945년 원자력청(CEA: Commissariat à l'Énergie Atomique)을 창설하여,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일찍부터 주목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여 1956년 최초로 전력을 마르쿨(Marcoule)에서 생산하였고, 1963년에는 전력생산을 위한 상업용 원자로를 시농(Chinon)에서 가동하였다. 1973년 14TWh(TWh=10억 kWh)였던 프랑스 원자력 발전량은 2005년 430TWh까지 증가하였다.

★ 프랑스 원자력 발전현황 (TWh = 10억 kWh)



자료: OECD International Energy Agency

프랑스는 민간분야의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유럽 차원에서 진행하는 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European Atomic Community)의 창설을 주도하였다. 제2차 대전 이후 군사적 목적으로 핵개발을 진행했던 프랑스는 민간분야의 원자력 에너지 개발비용을 EURATOM을 통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마련하려 하였던 것이다. 프랑스는 EURATOM을 통해 민간분야 원자력 에너지 개발비용을 마련한다면, 정부예산을 군사용 핵개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다른 ECSC 회원국은 프랑스의 EURATOM 창설 주장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였고, 미국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해 처음에는 프랑스의 EURATOM 창설 구상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선언한 이후 발생한 수에즈 위기(1956~1957년)로 인해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나타났다. 프랑스와 영국이 미국과 소련이라는 핵 강국의 압력 속에서 전쟁에 이기고도 수에즈 운하를 상실하게 되자, 유럽은 중동국가로부터의 안정적인 석유 확보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석유가 아닌 천연가스, 원자력 에너지 등의 대체에너지 개발에 눈을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당시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속에서, ECSC 회원국들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목적으로 EURATOM의 창설이 이용되었다. 당시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던 독일과 베네룩스 국가들은 EEC 창설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경쟁력이 열세였던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ECSC 창설 구상을 프랑스 정부에 조언했고, 초대 ECSC '고위기구 (High Authority)'의 의장을 지낸 장 모네 (Jean Monnet)가 2개의 공동체를 동시에 창설할 것을 주창하였고, 그 결과 EEC와 EURATOM 창설 조약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체결되었다.

EURATOM 조약은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된 연구,



만, 자신들의 원자로인 EPR의 우수성에 대해 확신한다는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프랑스 업체는 향후 아랍에미리트에서 있을지 모르는 추가 원전 건설을 수주할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 언론은 이번 원전 수주 실패의 원인으로 가격경쟁력 문제 외에, 최근 프랑스가 건설하고 있는 원전의 공기 지연 문제가 프랑스 원전 건설에 대한 신뢰에 흠집을 내었다고 언급하였다. 프랑스가 자국의 플라망빌(Flamanville)에서 건설 중인 원전의 공기가 지연되어 예상 건설비보다 2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고, 핀란드 올킬루오토(Olkiluoto)에서 아레바가 건설 중인 원전은 3년이나 공기가 지연되어 23억 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프랑스 언론은 프랑스 측 컨소시엄 업체들 간의 이해관계 조율 실패를 또 다른 원전수주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원자력 발전기 제조사인 아레바와 세계 최대의 원자력 발전 운영사인 EDF 등 원자력 발전분야의 슈퍼스타급 기업들이 프랑스 측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들 기업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 프랑스 측 컨소시엄이 빠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프랑스는 여전히 원전사업의 선두주자

한국이 금번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서 프랑스를 이겼지만, 프랑스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2001년 프랑스 정부는 원자력 분야의 2개의 국영기업인 코제마(COGEMA, 핵연료 기업)와 원자로 전문생산기업인 프라마톱을 합병하여 아레바라는 공룡기업을 탄생시켰다. 아레바는 100여 개 해외지사과 7만 500여 명의 인력으로 2008년 매출액 130억 유로를 달성하였다. 아레바는 핵연료 공급 및 처리, 원자로 생산, 원자력발전소 건설까지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 세계 유일의 기업이다.

프랑스는 정부당국의 지원에 힘입어, 현재 EPR 방식의 원자로를 자국의 플라망빌(Flamanville)에서 1

만, 자신들의 원자로인 EPR의 우수성에 대해 확신한다는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프랑스 업체는 향후 아랍에미리트에서 있을지 모르는 추가 원전 건설을 수주할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 언론은 이번 원전 수주 실패의 원인으로 가격경쟁력 문제 외에, 최근 프랑스가 건설하고 있는 원전의 공기 지연 문제가 프랑스 원전 건설에 대한 신뢰에 흠집을 내었다고 언급하였다. 프랑스가 자국의 플라망빌(Flamanville)에서 건설 중인 원전의 공기가 지연되어 예상 건설비보다 2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고, 핀란드 올킬루오토(Olkiluoto)에서 아레바가 건설 중인 원전은 3년이나 공기가 지연되어 23억 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프랑스 언론은 프랑스 측 컨소시엄 업체들 간의 이해관계 조율 실패를 또 다른 원전수주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원자력 발전기 제조사인 아레바와 세계 최대의 원자력 발전 운영사인 EDF 등 원자력 발전분야의 슈퍼스타급 기업들이 프랑스 측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들 기업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 프랑스 측 컨소시엄이 빠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프랑스의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 실패

이번 아랍에미리트 수주 실패와 관련하여 프랑스 측은 실망감을 표하고 있지만, 아랍에미리트와의 다른 협력관계를 중시하여 대체로 아랍에미리트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 이번 원전수주와 관련하여 프랑스 정부를 대신하여 아부다비를 수차례 방문하였던 프랑스 대통령령 비서실장인 끌로드 게앙(Claude Guéant)은 “세기의 계약(contrat du siècle)”을 놓친 데 대해 3개 항목에서 코멘트를 하였다.

첫째, 프랑스는 이번 입찰 실패에 대해 실망했지만, 프랑스의 EPR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자로임을 확신한다.

둘째, 한국은 전력 생산비에서 강점을 가지고 수주를 획득하였다. 한국의 계획안에는 30년간의 전력 생산비가 프랑스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의 전기료가 싼 아부다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셋째, 이번 결정은 양국 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프랑스와 아랍에미리트는 다른 차원의 전략에서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주도한 프랑스 컨소시엄에 참여한 GDF, 수에즈, 토탈, 아레바도 이번 아랍에미리트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해한다는 성명을 냈지

집행위원회도 회원국의 원자력 에너지 활용 여부는 전적으로 회원국 고유의 권한이라 명시하고 있다.

그 결과 27개 EU 회원국 중 15개 회원국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NEA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EU 회원국의 전력생산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의존비율은 EU 회원국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원자력 발전소의 수적인 측면에서 59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는 104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 이어 2위, 원자력 발전용량 측면에서 418.3TWh를 생산하고 있는 프랑스는 806.2TWh를 생산하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전력공급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프랑스는 76.2%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79년 스리마일 원전사고 이후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미국,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녹색당이 사민당과 함께 정권을 잡아 2001년 정부 차원에서 원자

★ OECD 회원국의 원자력 에너지 이용비율 (2008년 기준)

국가	원자력 발전소 수	원자력 발전용량 (TWh)	전체 전력 공급에서 원자력 발전 비율(%)
벨기에	7	43.4	53.8
캐나다	20	87.9	14.5
체코	6	25.0	32.4
핀란드	4	22.1	29.9
프랑스	59	418.3	76.2
독일	17	140.9	23.4
헝가리	4	14.0	37.7
일본	55	240.5	24.9
한국	20	144.0	36.7
멕시코	2	9.4	4.0
네덜란드	1	4.0	3.8
슬로바키아	4	15.4	57.0
스페인	8	56.4	18.3
스웨덴	10	61.3	42.0
스위스	5	26.1	39.0
영국	19	47.7	13.2
미국	104	806.2	19.6

자료: NEA(Nuclear Energy Agency)

안전기준 설정,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활용 및 원자력 에너지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 에너지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EURATOM 핵물질 공급위원회(ESA: EURATOM Supply Agency)를 설치하였다.

2005년 6월 프랑스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International tokamak experiment)가 프랑스 카다라슈(Cadarache)에 설치하기로 결정된 이래, ITER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EURATOM의 체제 내에서 집행되고 있다.

★ EURATOM 예산 (2007~2011년)

항목	액수
핵융합로 연구	19억 4,700만 유로 (ITER 건설비를 제외한 순수연구비는 9억 유로 이상)
핵분열 및 방사능 안전	2억 8,700만 유로
공동연구소 활동 (핵폐기물 관리 및 환경문제 관리, 핵에너지 안전)	5억 1,700만 유로
총 27억 5,100만 유로	

자료: European Commission

1957년 로마조약으로 EURATOM이 창립되어, 1960년부터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연구 및 활동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에너지 자원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원자로에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는 프랑스 방식과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미국 방식 중 프랑스 외의 다른 회원국들이 미국 방식을 선호하는 등 이견이 많았기에 기대했던 것만큼 활성화될 수 없었다. 그리고 EURATOM은 현재까지도 조약상의 측면에서 EU 외부영역으로 남았다.

EURATOM이 조약상 EU 외부영역으로 남은 것은, 오스트리아와 같이 EU 회원국 중에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반대하고 있는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EURATOM의 행정업무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EU

EU 경쟁법의 규제와 대응

Dealing with regulations of EU competition law

The purpose of the competition law is to maintain and encourage competition in the market while enhancing the welfare of consumers. The EU competition law has another purpose of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 market. The European Commission has been trying to protect its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and consumers from large corporations' anti-competitive behaviour. The EC seems to have strengthened its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efforts of the competition law in recent years. As we expect to see a rising number of Korean firms entering the EU market, Korean corporations need to develop strategies to deal with the EU competition law.

강화추세에 있는 EU 경쟁법

경제법의 핵심 분야인 「경쟁법(competition law)」은 시장의 올바른 경쟁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의 복지 향상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EU 경쟁법은 유럽 단일시장 완성의 촉진이라는 목표를 하나 더 갖고 있다. EU 경쟁당국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 및 소비자들이 거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얼마 전 있었던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10억 유로 벌금 부과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 팔기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반대의견 발표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U 경쟁법 위반사건은 경쟁총국(DG Competition)이 담당하며, 최종적인 법 위반 제재 조치는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27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단 전체회의(College of Commissioners)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27명 중 1명의 집행위원(Commissioner for Competition)이 경쟁법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최근 EU 경쟁당국은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EU FTA가 출범함에 따라 유럽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이 증가할 전망이므로 EU 경쟁법의 집행 현황과 대응전략을 서둘러 파악해야 한다.

EU 경쟁법의 규제내용과 '시장'의 개념

EU 법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통상법과 경쟁법이다. 통상법은 한-EU FTA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경쟁법도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EU 경쟁법은 유럽공동체(EC) 설립조약 제81조~제89조(리스본조약 발효 후 EU 기능조약 제101조~제109조)를 말하며, 주요 내용은 경쟁질서 왜곡행위 및 카르텔 규제(EC 조약 제81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EC조약 제82조), 기업결합 규제(이사회규칙 139/2004), 국가보조금 규제(EC조약 제87조) 등 4가지이다.¹ EU 경쟁법의 위상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co Swiss China Time Ltd. V. Benetton International NV 사건에서 "EC조약 제81조는 유럽공동체에 부여된 임무의 완수, 특히 공동체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꼭 필요한 조항"이며, 나아가 Metro-SB-Grossmaerkte GmbH & Co. KG v. Commission 사건에서는 "EC조약의 경쟁법 관련 조항은 유럽단일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질서의 존재를 위한 조항들"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EU 경쟁법의 주요 내용 중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 규제의 3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¹ 종래 EC 경쟁법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 정완 (1991), 「EC 경쟁법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기, 핀란드 올킬루오토에서 1기, 중국 광둥 성의 타이산에서 2기 건설 중이다.

2004년 원자력 기업인 중국광둥핵전집단(中國广东核电集团, CGNPC: China Guangdong Nuclear Power Company)은 4기의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을 발주하였다. 이후 오랜 검토결과, 2007년 11월 CGNPC는 웨스팅하우스와 아레바가 각각 2기의 원전을 건설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중국에서는 프랑스 아레바의 원자로 방식인 EPR과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 방식인 AP1000이 경쟁관계에 있다.

프랑스 업체는 원전 시공뿐만 아니라 원전의 지분 참여를 통해서 전 세계 차원에서 원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DF는 CGNPC와의 계약을 통해 아레바가 건설하는 2기의 원전의 30% 지분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 원전건설, 원전설비 조달, 원전설계, 원전 운영 인력 훈련, 원전 운용 등 원전사업을 담당하는 회사인 유니스타(Unistar)는 미국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Constellation Energy)와 EDF가 2007년 7월에 전략적 공동투자 형태로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프랑스 아레바의 미국형 원자로 방식인 US EPR의 미국 내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적으로 원자력 산업을 육성한 프랑스는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원전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끝으로, 현재 원자력 발전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다면, 중장기적인 에너지 안보확보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직까지 원자력 발전 이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원자력 에너지 개발은 큰 의미를 지닌다. ★

안상욱 한서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요소는 사업자(기업) 또는 사업자단체의 '시장 내 지위'이다. 시장 내 지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을 정의해야 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경쟁법 조치가 시장의 적절한 정의에 따라 취해지지 않을 경우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판례와 규정을 통해 확립된 EU 경쟁법상 시장의 정의는 상품 시장, 지리적 시장, 시간적 시장의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관련 상품 시장(Relevant Product market)에서 중요한 요소는 해당 상품과 타 상품 간의 교환가능성(interchangeability) 또는 대체가능성(substitutability)이다. EU집행위원회의 「관련 시장의 정의에 관한 지침(Notice on the Definition of the Relevant Market for the Purposes of Community Competition Law)」에 따르면 관련 상품 시장을 정의할 때 '수요 대체가능성', '공급 대체가능성', '잠재적 경쟁' 등의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 이는 대체상품의 존재 여부, 소비자 관념, 소비자의 선호도, 시장 진입장벽, 기타 가격차별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다.

지리적 시장(Relevant Geographical market)은 해당 상품이 거래되는 지역적 개념을 말하는데, EU 경쟁법상 주로 EU 시장과 EEA(EU 회원국과 스위스를 제외한 EFTA 회원국을 포괄하는 지역), 세계 시장 등에서 해당기업과 경쟁자들의 시장점유율 및 소비자 관념, 선호도, 거래 패턴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지리적 시장개념은 기업 결합심사에서 많이 논의된다.

시간적 시장(temporal market)은 예컨대 농산물의 경우와 같이 계절적 요소에 의한 변화가 두드러지는 시장을 말한다. 시간적 시장 개념은 계절 및 시간 변화에 따른 수요공급의 변화를 고려하는 개념인 것이다.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이와 같이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때로는 인정되기도 하고 때로는 인정되지 않기도 하여 경쟁법 적용의 유·불리가 결정된다. 예컨대, 특정 자동차에 공급하는 와이퍼를 생산하는 기업은 EU 내 와이퍼 시장에서 30%의 점유율을 갖는다 하더라도 '특정 자동차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와이퍼'로 시장범위를 줄이면 시장점유율이 100%가 될 수 있다. 이때 와이퍼 시장에 대한 경쟁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면, 기업은 시장을 넓게 정의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를 원할 것이고, EU집행위원회는 시장을 좁게 정의하여 규제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

EU집행위원회의 권한

EU는 2004년 5월 1일에 지난 40년 이상 공동체 경쟁법규의 근간을 이루던 규정(Regulation) 제17/62를 폐지하고, 대신 규정 1/2003을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의 핵심 목적은 전 회원국의 경쟁당국 및 법원에 EC조약 제81조와 제82조의 적용 권한을 부여하여 EU집행위원회로 집중된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EU의 확장 및 EU집행위원회 업무과중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보충성 원칙(Subsidiarity principle)에 따른 분권화를 꾀하는 한편, EU 시장 내에서의 자유경쟁 달성과 경쟁법규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많이 도입하였다. 우선 EU집행위원회에 사업자 정보 제공 요구권을 비롯하여 제3의 장소에서의 압수수색권을 부여하였고, 필요한 경우 해당 회원국의 경찰력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벌금감면 및 비공식적 사건종결 재량권을 통해 사업자들의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였다. 단,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권한을 갖는 동시에 사건의 적발과 조사,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자료접근 보장 및 청문절차 부여와 같은 방어권 행사의 기회보장 의무도 지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 경쟁당국과 특정사건에 대한 구체적 관할 배분에도 개입할 수 있는데, EU집행위원회에서 사건 심리를 주도할 경우 회원국들의 심리절차가 중단되고, 회원국들은 EU집행위원회 결정과 배치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법원에 대하여도 공동체 경쟁법규 적용사건의 판례들을 수집하고, 구체적 사안에 대

하여 법원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간접적으로 회원국의 사법질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열어두고 있다. 결국 현행 규정상 EU집행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은 명목상 분권화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카르텔 참여기업에 대한 EU 경쟁당국의 제재

EU 경쟁당국은 2008년 발생한 7건의 카르텔에 참여한 총 37개 기업에 대하여 22억 7,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특히 자동차유리 카르텔에 대하여 단일 카르텔사건 최대 벌금액인 13억 8,000만 유로를 부과했고, 그중 생고뱅(Saint-Gobain)사에는 단일기업 최대 금액인 9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매우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4개 사건은 카르텔 자진신고가 이루어져 전액 벌금면제 조치를 했고, 5건은 적극적인 조사협조로 인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면해주었다. 한편 국제항공여객운송(2008.3), 세제용품(2008.6), 탄화칼슘(2008.6) 및 시멘트 제조(2008.11) 등에 대하여 카르텔 조사가 전격 실시되었고, 국제마린호스 카르텔에 대한 심사보고서 발송 등 새로운 제재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최근까지의 카르텔 제재 실적을 보면 과거에 비해 적발 건수와 그에 대한 벌금부과액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카르텔 자진신고제도의 도입으로 카르텔 적발확률이 크게 높아지고, 카르텔에 대한 경쟁당국의 제재의지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EU 경쟁당국의 제재 실적

(단위: 백만 유로)

연도	제재 건수	제재기업 수	EU집행위 부과 벌금액	ECJ 조정 벌금액
1990~1994	11건	237개	566.7	343.3
1995~1999	10건	60개	569.9	271.0
2000~2004	33건	188개	3,697.5	3,207.3
2005~2008	27건	168개	8,139.1	8,139.1
합계	81건	653개	12,973.2	11,961.6

자료: 김재신 (2009), "2008년 EU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실적 및 특징", 『경쟁저널』, (143), 93-97.

M&A 규제

2008년에는 2007년의 402건에 비해 다소 감소한 총 347건의 M&A가 EU집행위원회에 신고되었고, 1단계 심사기간 중 10건, 2단계 심사기간 중 3건이 M&A 신고 이후 철회되었다. 2008년에 1단계에서 심사가 완료된 것은 총 307건이며, 그중 189건이 간이신고절차(Simplified Procedure)를 통하여 신속하게 심사처리되었다. 또한 1단계 심사를 통하여 총 19건의 조건부 승인이 결정되었으며, 2단계 심사가 이루어진 14건 중 5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 결정되었다. 2007년에는 아일랜드 저가항공사인 라이언에어(Ryanair)의 에어링거스(Aer-Lingus) 인수에 대한 EU집행위원회의 금지결정이 있었지만, 2008년에는 이러한 금지조치가 없었다.

한편, 한국 STX 그룹의 노르웨이 조선업체 아커야즈(Aker Yards) 인수에 대하여 EU 경쟁당국의 신고 및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2단계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건 없는 원안 승인'으로 결정되었다. EU 경쟁당국은 2단계 심사절차에서 크루즈선 건조 시장의 잠재적 진입자 소멸 및 조선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경쟁을 우려했으나 2008년 5월 최종적으로 원안을 승인하였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에 대한 제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EU 경쟁법 집행은 크게 IT, 에너지 및 지적재산권의 3개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IT 분야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글로벌 거대기업에 대한 법 위반혐의의 조사 및 제재 조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지난 2004년의 시정조치 미이행에 대해 9억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 팔기에 대한 공식조사 절차도 새롭게 시작되었다. 인텔에는 2007년 7월 CPU 시장의 법 위반혐의에 대한 1차 심사보고서가 발송되었다. 그리고 2008년 초 PC 유통 시장에 대한 기습조사에 이어 같은 해 7월 추가적인 심사보고서가 발송됨에 따라 법 위반혐의에 대한 보

하나의 유럽을 향한 노력: 유럽의 문화예술인 교류 지원 프로그램

Another way of integrating Europe: European Talent Exchange Program

With the adoption of the Lisbon Treaty in December, 2009, the EU is faced with not only the problems of democratic deficit but also of cultural identity deficit. Even with the Treaty in place, European artists and other cultural professionals still suffer from limited mobility (i.e. limited temporary cross-border movement). The EC is trying to solve this problem with various policies and also by holding pan-European events such as the European Border Breakers Awards, which is expected to play a vital role in solving EU's problems of cultural identity deficit.

유럽의 신년 음악축제 EBBA

해마다 연말연시에는 각종 시상식들로 분주하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EU에서는 매년 유럽 각국의 문학, 건축, 음악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작품 또는 재능을 가진 예술인들을 뽑아 시상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음악분야 시상식인 EBBA(European Border Breakers Awards)는 EU 회원국 간 유럽 음악의 교류 활성화와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EU 문화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매년 1월 개최된다.

2010년 7회를 맞는 EBBA는 EBU(European Broadcasting Union)와 ETEP(Billboard Information Group, European Talent Exchange Program) 등이 지난해 음반 판매량, 공영 라디오 방송 횟수, EU 페스티벌 참여율 그리고 공연 능력 등을 평가하여 10명의 우수한 유럽 뮤지션을 시상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위 평가항목들이 뮤지션의 본국 또는 음반 제작국을 제외한 그 외 EU 회원국에서의 성과만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유럽 음반시장의 성장과 다양성 그리고 유럽 음악인들의 국경을 넘는 자유로운 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된 EBBA의 설립 취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동 문화정책성의 결핍과 국가 간 예술가 이동의 제약

2009년 12월 리스본조약의 발효로 통합이 한층 강화된 EU는 민주성 결핍뿐만 아니라 유럽 공동의 문화

정책성 결핍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EBBA와 같은 유럽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 볼 수 있다. 유럽 공동체 설립 이후부터 리스본조약이 발효된 지금까지 유럽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 및 활동에는 보이지 않는 제약이 남아 있다. 회원국마다 상이한 사회보장제도와 세금 문제, 비자와 노동 허가 문제, 높은 항공요금 등이 그것이다.

아래 그래프는 EU 15개 도시에서 유럽 문화 활동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바르셀로나, 베를린, 브뤼셀, 부다페스트, 런던, 파리 또는 비엔나의 7개 도시로 이동하는 항공요금을 비교한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노르웨이의 베르겐과 영국의 런던 간 이동 요금이 독일의 뮌헨과 런던 간 이동 요금보다 3.5배나 높았다. 베르겐에서 런던까지의 이동은 핀란드의 헬싱키와 런던 간 이동보다 더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7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유럽의 중심 공항에서 출발하는 것이 유럽의 주변지역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요금이 적게 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예술가들이 불공평한 조건하에서 이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프리랜서 예술가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에서도 각 유럽 국가들은 큰 차이를 보인다. 영국과 아일랜드 및 북유럽 국가들은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예술인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의무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하고 있

다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2005년부터 추진되어온 업종 조사의 연속선상에서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전기 및 가스 독과점 기업들의 장기 배타적 공급 계약 관행을 법 위반으로 판정하는 등 조사 및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EU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시장구조 개혁을 적극 뒷받침하였다. 특히 독일 전력회사 E.ON은 반독점조사 중지를 위해 EU 경쟁총국에 자사 발전시설 일부 및 송배전 네트워크 시설의 제3자 매각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독일 가스회사 RWE는 가스 수송망의 제3자 매각방안을 제안해 일부 회원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하여 적극 추진되고 있는 송배전 시설망 구조 분리 등 자유화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2008년 6월 제약산업에서는 대형 제약회사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2008년 7월에는 24개 회원국의 음악저작권료 징수 협회(Collecting Society)의 국가별 독점체제를 시정 조치하는 등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경쟁법을 적극 집행하였다.

리스본조약 발효와 대응전략

최근 EU는 리스본조약의 발효로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EU는 리스본조약을 통해 '유럽 대통령'으로 불리는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외무장관격인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 신설뿐 아니라 유럽대외관계청(EEAS)을 새로 만들어 국제정치적 역할과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만장일치제 대신 다수결제의 확대적용으로 EU 내 의사결정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G20 협의 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한국으로서는 EU의 협조가 더없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은 EU 위상 제고와 한·EU 관계 강화에 대비해 EU 외교 라인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EU 기본협력협정과 한·EU FTA가 발효되면 한·EU 관계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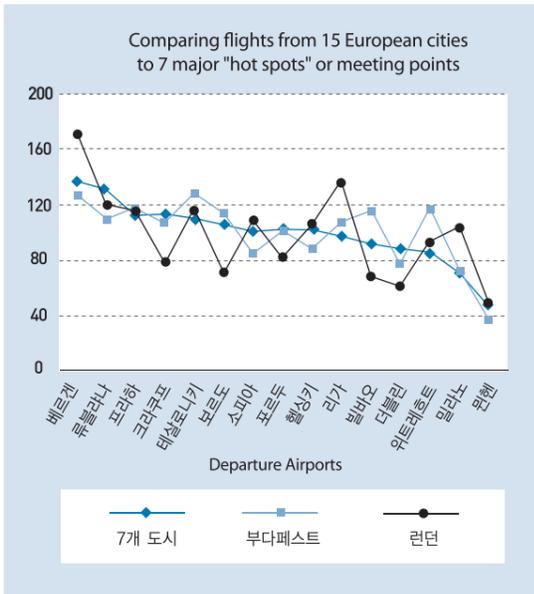
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경제협력도 확대될 것이므로 이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EU 외교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과 경제단체들도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EU 정책 정보 수집과 규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로비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EU 경쟁당국은 카르텔 사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화해절차(Settlement Procedure)'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쟁법 제도 및 절차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최근 본격화된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경쟁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한-EU FTA 체결에 따른 한국기업의 유럽 진출 및 무역 확대, 한-EU 경쟁협력협정 체결에 따른 경쟁당국 간 협력증진 등 한국과 EU 간의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EU 경쟁정책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

정 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동성과 항공요금

(단위: %)



주: 파란색 선은 위 15개 도시에서 바르셀로나, 베를린, 브뤼셀, 부다페스트, 런던, 파리 또는 비엔나의 7개 도시로의 5박 6일 직항 항공요금 (2008년 11월 11일에서 18일 사이), 단위는 목적지 평균 항공요금을 100%로 환산한 기준.
 자료: ERICarts (2008, 10.), Mobility Matters: Programmes and Schemes to Support the Mobility of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p. 28.

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특별의무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은 예술직업군에 대한 특별공적지원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회원국들은 국가 간 사회보장제도 차이와 예술인들의 원활한 국경 이동을 방해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벨기에가 채택하고 있는 Tiers-payant와 프랑스의 Portage salarial 제도는 정부가 아닌 제3의 중재기구(Intermediary third party)가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중재 서비스로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예술인들의 소득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현재 EU 차원에서는 유럽의회 문화위원회와 문화예술 이익단체가 EU 회원국의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 관련 법령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속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신상정보와 예술 분야, 계약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유럽 전문예술가 등록제(European Professional Artist Register)를 실시하고, 유럽사회보장카드를 도입해 예술가들의 건강, 연금, 실업 수당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럽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EU집행위원회 교육과 문화 담당 총국의 2008년 보고서¹에 따르면 35개 유럽 국가와 예술가들의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과 제도적 지원 동기는 다양하다. 절반 이상의 회원국 정부는 예술가 이동 지원제도(mobility scheme)의 동기를 문화·외교적 측면에서 찾은 반면, NGO와 민영재단은 시장 창출 기회 등 경제적 측면을 가장 중요한 지원 동기로 꼽았다. 또한 회원국의 문화부와 외교부가 국가 이미지 증진을 위해 문화협력과 문화외교를 강화하고 문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개별 예술가들은 주요 아트 비엔날레 등에 참여해 명성과 경제적 이득을 얻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 국가는 문화정책상 예술인들의 국가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창작산업과 문화다양성 및 문화산업 수출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화전문가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그 근거이다. 북유럽 일부 국가와 스페인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Kultur Kontakt Austria와 같은 준정부기구가 이웃국가와의 국경 간 대화와 협력을 도모하는 지역적 교류증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중·동 유럽과 EU의 신·구 회원국 예술가들을 위한 문화적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 독일의 Kulturstiftung des Bundes도 이와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예술가들의 국경 간 이동 지원은 외교관계 측면에

¹ ERICarts (2008, 10.), Mobility Matters: Programmes and Schemes to Support the Mobility of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서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영국은 이라크전 참전으로 악화된 이슬람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영국 예술가들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고, 영국의 문화 정체성을 해외에 알려 타협과 이해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해외 예술가들을 위한 스튜디오의 수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정부의 지원보다는 박물관 등 문화기관의 지원을 통해 독립 예술가 주도로 이루어졌다. 또한 북유럽 국가에서는 민영재단과 NGO 주도로 Sleipnir와 BEN(Baltic Euroregional Network) 등과 같은 예술가 이동 지원제도가 운영 중이다.

유럽 각국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예술가를 위한 국경 이동 및 교류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은 회원국마다 동기와 목적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대한 EU 차원의 노력이 보다 절실해진 이유는 리스본조약 발효로 EU의 통합이 더욱 심화된 가운데 유럽의 공동정체성과 문화적 결핍의 문제가 여전히 미결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는 회원국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BBA와 같은 유럽 음악인들의 축제가 2010년 초에 더 큰 의미를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고주현 연세-SERI EU센터 Post-Doc. 연구원

유로지역 경제동향: 지속적인 실업률 상승이 문제

Continued rise in unemployment threatens Euro area's economic recovery

The European Commission published its quarterly report on the performance of euro area's economy and its financing conditions. The highlights of this report include the impact of the crisis on the labour market, the euro during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reasons behind the need for adopting structural reforms to foster knowledge-based economies. It analyses the current trends in European banking and member state's efforts to ensure fiscal sustainability, and it also provides policy suggestions.

EU집행위원회는 2009년 12월 최근 유로지역의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을 분석한 <유로지역 경제동향에 대한 분기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는 금융위기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금융위기 당시 유로화의 위상, 유로지역의 구조적 개혁에 대한 회원국 정부의 입장, 지식 기반 경제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최근 유럽은행들의 동향과 유로지역 재정 건전화 작업을 분석·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2009년 유로지역에서는 최악의 경제침체가 지속된 가운데 3/4분기를 기점으로 금융지표들이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유로지역의 GDP는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지속하였으나 2009년 3/4분기부터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이는 세계 각국의 공조 노력으로 외부 환경이 회복되고, 금융 여건이 향상된 데에 기인한다. 세계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유로지역의 주요 성장 동력인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냈고, 이는 빠른 경기회복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가계 소비는 노동시장의 악화로 인해 3분기 동안 위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낮은 자산가격과 수요로 인해 기업과 가계의 신용 및 재정 상태도 좋지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여러 금융지표가 불안정한 상태이다. 2009년 3/4분기 발표한 전망에서 EU집행위원회는 2009년 4/4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 결과 2009년 한 해 GDP 성장률은 -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유로지역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 여기에는 노동시장의 악화가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 유로지역의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회원국 및 기업에서 상당한 수준의 실직이 발생하였다. 다만, 생산량 감소 대비 실업률의 증가는 유로지역 전체로 볼 때 아직 낮은 수준이다.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2010년 10.75%에서 2011년 11%까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상승률은 2009년 상반기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번 금융위기가 임금에 미친 영향을 VAR 분석¹을 통해 살펴보면 예상치 못한 GDP 충격에 대응하여 명목 임금(nominal wages)이 큰 변화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협상 임금(negotiated wages)은 비즈니스 주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 및 경제 위기로 인해 상승된 불확실성은 통화시장에 높은 변동성을 유발했다. 금융위기 동안 유로화는 금리가 낮은 통화보다 금리가 높은 통화에 대해 높은 절상률을 보였는데, 이는 유로가 캐리 트레이드 흐름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0%대의 낮은 금리²를 유지하

¹ VAR(Value at Risk) 분석기법이란 금리, 주가, 환율 등 기초적 시장가격에 대한 미래분포를 예측하여, 주어진 신뢰수준에서 포트폴리오의 목표보유기간 동안 기대되는 최대 손실, 즉 향후 불리한 시장가격변동이 특정 신뢰구간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입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최대 손실 규모를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² 2010년 1월 현재 미국, 일본, 영국의 정책금리는 각각 0.25%, 0.1%, 0.5%

였다. 국가의 외환보유고가 낮고, 부채 비율이 높고, 대외순자산이 낮은 상태는 리스크 증가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를 유로화 대비 절하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신흥국들의 높은 금리와 리스크 수준은 유로화가치의 절상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인플레이션 격차와 환율 변동의 결정 요소들은 위기 이전에도 중요했지만, 금융위기 기간 동안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구조개혁은 잠재 산출량 감소라는 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거나, 재정 건전화 작업에 도움을 주는 등 유로지역의 출구전략에 필요한 여타 작업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성공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은 정부의 개혁 지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urobarometer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융위기는 대부분의 유로지역 국가들에서 경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회원국에서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유로지역의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3/4분기부터 플러스(+)로 전환된 GDP 성장률 지표와 더불어 경제 신용도 지표도 양호한 상태이며, 2010년 GDP 성장률은 0.7%, 2011년에는 더욱 상승된 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회복은 전 세계 각국이 실시한 대규모 정부 지원이 주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9년 유로지역 경제의 주요 사건을 돌아해보면, 첫째 2008년 12월부터 실행된 EERP(유럽 경제회복 계획)의 활약을 꼽을 수 있다. EERP는 금융위기 이후 EU 경제활동의 급격한 붕괴를 막는 완충 역할을 하였다. EERP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2009년 유로지역의 GDP 성장률은 더 큰 폭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시행 후 2년 동안 유지할 것을 약속한 EERP는 2010년에도 경제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정부의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유로지역의 경제가 무기한적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의 지원에 의지할 수는 없다. 2009년 10월 EU 경제재무장관 이사회(Ecofin Council)는 정부와 중앙은행에게 효율적인 출구전략이 실행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투명한 원칙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예기치 못한 경기 재침체가 없다는 가정하에, 늦어도 2011년부터 EU 회원국들의 재정 건전화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건전화 작업에는 매년 최소한 GDP 0.5%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한편 각국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 특정 회원국들은 2011년보다 일찍 건전화 작업에 착수할 수도 있다. 더불어 재정 건전화와 과도한 부채 비율 조정은 회원국의 특정 상황에 맞추어 차별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경제재무장관 이사회는 12월 회원국들에게 과도한 부채를 바로잡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셋째, EU집행위원회와 ECB는 금융부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서서히 줄이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는 EU집행위원회의 제안과 EU 국가의 원조 원칙에 맞춰 회원국들의 경제와 금융 안정화를 고려한 후 점진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EU는 금융시장의 감독 구조를 개혁하고 있다. 2009년 초 EU집행위원회가 제시한 금융시장 감독 구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입법 방안과 Larosière Group의 제안을 바탕으로 이사회는 12월 EU의 새로운 금융감독 체계를 승인하였다.

2010년은 유로지역 정책결정자 및 경제에 있어 EU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리스본 체제를 통해 정치적 통합을 강화한 EU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현존하는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된다.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09). Quarterly Report on the Euro Area.) ★

이지혜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제1회 국제학술회의(Annual Meeting) EU Centre's First Annual International Academic Meeting

On the 10th of December, the Yonsei-SERI EU centre held its first annual International Academic Meeting as it celebrated its successful first year. During the meeting, participants shared the outcomes of their research and their opinions on current EU-related issues. This first meeting was important for the EU centre in terms of planning for the future as the participants agreed to strengthen their academic cooperations while concentrating on their research areas.

The panel discussed on the expected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EU FTA. Its political aspects were also discussed in order to analyse the effects of adopting the Lisbon Treaty. They also shared their views on other topics such as the EU competition law and the fair trade system.

The academic link between specialists from major EU member countries and the Yonsei-SERI EU centr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wards the centre's future performance in a significant way. It is believed that this link will provide a foundation for developing the EU centre into an organisation that has a network with a global reach.

2009년 12월 10일 연세-SERI EU센터는 센터 설립 1년을 마감하며 한 해 동안의 주요연구 성과와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연세-SERI EU센터의 첫 번째 국제학술회의라는 점과 EU센터의 학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집중적이고 심화된 연구 영역을 개척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연세-SERI EU센터는 제1회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2009년 한국과 EU의 최대 이슈였던 FTA를 학문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한국과 EU를 대표하는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하여 FTA 발효 이후 초래될 기대효과와 정치적 함의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EU의 경쟁법과 공정거래제도,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EU의 정치적 변화와 향후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EU 주요 국가의 전문가들과 연세-SERI EU센터의 학문적 연결은 향후 EU센터의 활동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글로벌 수준의 네트워크 형성은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EU센터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